

# 세계 각국의 동물용의약품 취급과 판매제도

申 光 淳\*

## 1. 세계의 축산과 동물약품의 현황

FAO의 집계에 의하면 세계의 가축사육두수는 소가 12억두, 말이 1억 2천두, 면양이 10억두, 산양이 4억두, 돼지가 7억두, 닭이 60억수(브로이라 60억수)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물에 사용하는 약품류의 종류와 금액은 사육두수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일반적으로 북반구의 선진국에서는 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 농후사료를 다급하는 사육형태로 동물약품의 사용량도 많다. 특히 동물약품 중에서도 사료첨가물이 약 50%를 점하여 항생제 등 성장촉진제, 항기생충제, 영양보충제가 중심이 되며 치료제로는 항생항균성제제의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반구에서는 면양, 소를 중심으로 하는 방목축산이 주류로서 가축두수에 비하여 동물약품의 사용량도 적고 법규제도 떨어져 있다. 즉 동물약품중 사료첨가제는 극히 소량이며 구충제, 외부기생충구제제, 원충감염치료제, 구제역백신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축산업에서도 남북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동물약품의 사용량이나 판매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각국의 화폐기준이 다르고 유통시장의 정보자료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의 동물약품시장을 100(약 100억불 규모로 추정)으로 본다면 북미주가 32.4%로서 최대규모이며 서유럽이 24.7%, 남미가 10.9%, 아시아가 11.7%로 추계하고 있다. 북미주 중에서도 미국이 30.6%로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바 그 이유로는 이 지역의 축산이 주로 소, 돼지, 닭을 중심으로한 집단사육형 경영 형태이며 더욱이 항균성물질 등의 사료첨가제가 전동물약품이 45%정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유럽은 각나라의 시장규모가 적어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랑스도 5.1%, 서독이 4.2%, 스페인이 3.6%, 영국이 3.2%, 이탈리아가 3.1%의 순이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 지역의 약 50%를 점하여 중국을 포함한 공산권은 세계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이밖에 호주, 뉴질랜드는 2% 정도이며 한국(약 2억불규모), 대만도 각 2%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동물약품의 세계현황으로 볼때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규제내용도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분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서독, 프랑스 등 서유럽 그리고 일본, 대만의 동물약품에 대한 취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내용을 요약 소개함으로써 현재 논란되고 있는 약사법개정(안)에서 규제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믿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바이다.

\*서울대학교 獸醫科大學

## 2. 미국 및 캐나다의 동물약품 취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현황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규제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기란 지면상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며 일람표로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각나라의 규제법규나 시행규정 또는 취급 절차 등의 기본개념은 미국의 FDA규제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대체로 그 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국의 규제내용을 중심으로 소개코자 한다.

미국의 경우 동물약품의 인허가는 FDA의 수의약품관리국(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 취급하며 식품, 약품 및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다만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미농무성(USDA)에서 관리하고 있다.

미국 FDA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동물용의약

품의 취급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즉 ① 수의사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서만 유통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FDA규정에 의하여 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처방약품(Animal Prescription Drugs)과 ② 각종 동물약품취급업소에서 수의사의 처방없이 양축농가에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는 OTC약품(Over the Counter, 상품화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동물용의약품 유통내용을 그 취급대상 물량이 많은 것부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분, 8.33억불 규모의 유통점유통)

대동물병원(수의사) : 32.6%

농업용자재상(가축·사료상) : 22.8%

소동물병원(수의사) : 14.6%

축협·농협등 농민단체 : 14.3%

우방식(牛房式) 육성우복장 : 5.8%

가금관련사업장 : 5.7%

약국(인체약품 겸업) : 4.2%

상기와 같이 다양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것

표 1. 각국의 동물용의약품 취급(판매) 규제내용(요약)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판매가능 여부	도·소매단계의 취급자격	취급(판매)시의 규제
미 국	가	없음(수의사)	FDA규제에 따른 자율적관리(등록제)
카 나 다	가	수의사·약사	“ ”
영 국	가	수의사·약사	당국에 등록필자
서 독	가	수의사·약사	지방정부의 허가취득자
프 랑 스	가	수의사·약사	당국의 등록필자
벨 기 에	가	약 사	“ ”
네덜란드	가	수 의 사	“ ”
덴 마 크	가	약 사	보건부의 허가취득자
호 주	가	수의사·약사	“ ”
일 본	불가	약 사	“ ”
대 만	가	수의사·약사	지방정부의 허가취득자
한 국	불가	약 사	지방정부의 허가취득자 지방정부의 등록필자

※FDA규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과 비처방으로 판매가능한 동물약품(OTC)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소매 단계에서의 규제내용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수의사 고용과 판매업의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음.

이 미국의 특징임을 알 수 있으며 전체 동물약품의 47.2%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취급하에 유통된다는 사실로서 이는 미국의 동물약품관리 및 취급에 관한 규정(Model Animal Drug Code)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연유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물약품의 판매등 취급규제는 누구든지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듯 하나 실제로는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만이 취급할 수 밖에 없으며 만일 전기한 OTC품목 이외의 동물약품을 판매코자 할 경우에는 수의사를 채용하여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의약분업이 잘된 미국의 유통규조라 할 수 있다. 물론 OTC품목은 자유스러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OTC품목으로 지정되면 그 판매고도 신장된다고 한다.

또한가지 미국의 특징은 동물약품의 도매·소매구분이 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도·소매업의 영업권이나 자격조건에 대한 국가의 규제조항은 없다. 따라서 도·소매업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으며 그 취급업자에 대하여도 수의사, 약사 혹은 회학전공자로 못밖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주에서는 주규정(Model Drug Code)에 따라 동물약품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거나 직원중 유자격 수의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

### 3. 국가별 동물약품 판매제도

국가별 동물약품의 판매제도에 대하여는 전기표1에 요약한 바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 1) 동물용의약품 도·소매업자의 자격 :

① 영국은 당국의 등록을 받아야 도매를 할 수 있으며 소매행위는 수의사의 경우 모든 동물약품을 소매할 수 있으며 약사와 농자재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수의사의 통제가 필요한 항생항균제,

홀몬제 등을 제외한 특정약품(백신포함)만을 소매할 수 있다.

② 서독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도매행위가 가능하며 소매는 수의사, 약사가 다같이 할 수 있다.

③ 프랑스는 허가를 받은 도매업자에 의하여 수의사, 약사에게 공급되며 수의사, 약사는 동물약품을 소매할 수 있다. 다만 약사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판매가 되는 의약분업 체제로 되어 있다.

④ 벨기에는 약사만이 도·소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수의사의 처방전이 요구된다.

⑤ 네덜란드는 도매업자격을 가진자가 가능하며 소매는 수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⑥ 덴마크는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약사가 도·소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충제, 항기생충제, 비타민, 무기질은 약사, 수의사가 아니라도 허가를 받은자면 누구라도 판매가 가능하다.

⑦ 호주는 법절차를 받은자면 누구든지 도·소매가 가능하다. 다만 통제약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수의사)과 허가가 요구된다.

⑧ 일본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즉 약사가 근무하는 곳인 약국(비약사라도 개설가능)에서의 조제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람의 병원이나 진료소 그리고 가축병원(가축진료시설)에서의 조제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약국은 도지사의 허가로 되어있다.

⑨ 대만은 개업수의사, 약사가 경영하는 약국 그리고 수의사가 근무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어디에서나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동물병원이나 농협에서 판매시에는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⑩ 약국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에서의 조제행위만 인정할 뿐 판매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소매 행위에서도 약사의 관리하에서만 유통될 수 밖에 없는 체제이며 더욱이 선진국

과 같이 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처방전도 요구되지 않는 등 제도상 모순으로 양축가나 실수요자의 동물약품 수요조건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즉 약사의약품판매권만 인정하고 있지 수요자인 국민의 편리와 공중보건상 오·남용으로 인한 안정성등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약사법 규정인 것이다.

2) 동물병원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나라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동물약품을 동물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즉 미국, 캐나다, 영국, 서독,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대만에서는 수의사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만이 수의사에 의한 판매가 불가하게 되어 있다.

#### 4. 맺는말

이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취급과 판매에 대한 규제내용을 소개한 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가 현행 우리나라 약사법의 규정인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도·소매단계에서의 취급가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나라가 수의사의 처방전을 전제로 요구하고 있으며 수의사, 약사 등 유자격자에 의한 판매제도가 원칙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항생항균제, 홀몬제, 생물학적제제 등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제도는 동물약품의 판매권이 문제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취급함으로써 알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내성균 생성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오히려 장애를 주는 요인을 제거하자는데 그 규제의 근본 목적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더욱이 축산식품에 약물이 잔류됨으로서 인체에까지 세균내성이 전달되는 등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고려한다면 동물약품의 안전

한 관리와 적절한 사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외국에서는 동물약품과 가축질병관리의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물약품의 취급자격은 전문인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전문인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관점에서 판단지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약사법도 진실로 국민보건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축질병의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 그리고 축산물의 위생적생산과 공급이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의 판매점이 아니라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조의 ②항 약국의 정의를 상기시키면서 본고를 맺는다.

<추가 : 동물약품 취급과 판매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다음 내용은 지난 12월 1일 (株)東邦 李角模 사장께서 미국의 International Animal Health Division, Kalamazoo, Michigan, U.S.A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취급과 유통 그리고 판매 등 제도와 그 관리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졌기에 그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問 : 미국에서는 누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자가 될 수 있는가?

答 :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누구라도 도·소매업자가 될 수 있다. 업자가 수의사, 약사 혹은 화학자일 필요는 없다. 동물용의약품 도·소매업의 영업권이나 자격조건에 대한 국가의 규제조항은 없다.

그러나 일부 州에서는 州法에 따라 동물약품 판매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거나 직원중 유자격

수의사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은 州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多數의 州에는 관련 법조항이 없다.

연방 및 州의 약품 官吏들로 구성된 非정부 독립단체인 「식품 및 약품 官吏협회(The Association of Food and Drug Officials)」는 州정부들이 개별적 규제조항의 설치를 원할 경우 모델로 사용하도록 주정부로 배포되는 지침들을 설정해 놓았다. (the Model Drug Code)

이 약품기준법전(Model Drug Code)는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州에서는 이 규제조항들을 일부 혹은 전부 채택하고 있다.

유자격 수의사에게만 또 유자격 수의사에 의해서만 판매가능한 법정인정 FDA에 등록된 동물약품들과 수의사의 협의없이 농민들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점판매(over the counter, OTC)” 제품들(FDA에 등록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구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다(캐나다도 이와 유사함). 따라서 누구라도 OTC 제품을 농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으나 일부 州에서는 도·소매업자가 FDA등록동물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州의 법률은 동일하거나 약간 다를 수도 있다.

다수의 도·소매업자들은 일부 요구조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의사를 직원으로 두는 경향이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에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동물용의약품은 도매업자 역할을 수행하며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농민이나 수의사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업자에 의해 판매된다.

유통업자(도매업자)들은 FDA등록동물약품만을 수의사에게 판매하거나 OTC동물약품을 농민에게 팔 수 있다. 혹은 그들은 수의사와 농민 모

두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그들은 무면허일수도 있고 州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소매업자들이 있기는 하나 그들은 대개 협동조합이나 대규모 사료회사의 일부분으로서 상점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다.

問: 누가 동물용의약품의 소매업자가 될 수 있는가?

答: 누구라도 소매업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소매업자들은 대개 협동조합이나 소매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사료회사와 연결되어 있다.

問: 수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

答: 그렇다.

問: 동물용의약품도매업자의 등록 구비조건은 무엇인가?

答: 도매업자나 또는 미국의 경우의 유통업자는 국가의 규제에 종속되지 않는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州에서는 면허를 요구하나 모든 州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問: 동물용의약품 소매업자의 등록 구비 조건은 무엇인가?

答: 이는 모든 州마다 다르다.

問: 도매업자는 동물용의약품을 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가. 혹은 수의사나 농민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가?

答: 사실상 미국의 도매업자는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Upjohn과 같은 제조업자가 분배나 소매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업자나 대규모 사료회사 또는 협동조합에 대부분을 판매한다. 도매업자가 있는 곳에서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도매업자는 州의 요구조건(이에 대한 규제법령이 있는 州일 경우)에

부합된다면 수의사나 농민에 대한 판매 역시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영국을 비롯한 9개국의 동물약품 취급과 판매 등 제도에 대한 것을 요약한 내용이다.

### 1. 국가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자 자격은 ?

\*영국(잉글랜드와 아일랜드) : 법당국에 등록된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독일 :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된다.

\*캐나다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적용 제한은 없다. 캐나다의 도매업자에는, 정부가 운영하고 기구들과 수의사株主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구들 지방 판매권을 공급하는 사료 산업, 그리고 개인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벨기에 : 약사

\*호주 : 合法的인 자는 누구나

\*네덜란드 : 도매업 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프랑스 : 반드시 약사 또는 수의사

\*덴마크 : 약사

### 2. 국가별 동물용의약품 소매업자 자격은 ?

\*잉글랜드 : 수의사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소매할 수 있다. 약사는 특정제품만을 소매할 수 있다. 농산물 상인은 특정 제품만을 소매할 수 있다(백신 포함). 일반적으로 수의사만이 "통제"를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소매할 수 있다.(예 : 항생제, 호르몬등)

\*아일랜드 : 수의사와 약사는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소매가 가능하다. 농산물 상인이나 협동조합은 특정제품만 판매 가능하다.(intra-mammaries 포함)

\*독일 : 약사, 수의사

\*캐나다 : 처방약품, 통제약품, 마약판매는 수의사와 약사만 가능하다.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한 형태의 약품과, 상품에 "수의용"이라 표기된 약품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상점에서

판매가능하다.

\*벨기에 : 약사

\*호주 : 합법적인 자.

\*네덜란드 : 수의사

\*프랑스

: 약사, 수의사, 동물약품은 도매업자에 의해 수의나 약사에 분배된다. 약사와 수의사는 이 동물약품을 고객에 판매한다. 이때 수의사의 처방전이 요구된다.

\*덴마크 : 약사, 구충약, 외부기생충제, 비타민, 미네랄은 허가받은 자면 누구라도 판매가능하다.(약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됨)

### 3. 수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 ?

\*잉글랜드, 아일랜드, 독일, 캐나다,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는 판매 가능하다. 프랑스도 판매가능하다.(가축병원용은 가축용, 애완동물용 제품공급의 주요 창구임)

### 4.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자의 등록구비 조건은 ?

\*잉글랜드 : 신청서만 접수시키고, 관계당국에 등록비를 지불하면, 판매점 점검후 승인함.

\*아일랜드 : 확실치는 않으나 영국의 규정과 동일할 것임.

\*독일 : 반드시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캐나다 : 마약이나 통제약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 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업등록에 대한 등록구비조건은 없음. 마약을 판매한다면,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한 기록을 등록·보존해야 하며 이 기록은 마약통제법(Narcotics Control Act)에 따라 면밀히 검토됨. 통제약품 또한 반드시 등록해야함.

\*벨기에 : 보건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함.

\*호주 : 수의약품의 취득, 제조, 공급을 위한

자격이나 허가를 얻고자하는 자는 보건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시킨후, 등록비를 지불해야 함. 통제약품에 대해선 또 다른 자격이나 허가가 요구됨.

\* 네덜란드 : 공식등록서류 작성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도매상허가를 얻을 수 있음.

\* 프랑스 : 반드시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함.

\* 덴마크 : 약사이어야 함.

### 5. 동물용의약품 소매업자의 등록요건은 ?

\* 잉글랜드·아일랜드 :

a) 의사-수의사 면허

b) 약사-약사 면허

c) 농산물 상인-전문 면허 불필요, 당국의 허가만 받으면 됨.

\* 독일 : 수의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동물들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약사는 수의사의 처방 이후에 제품판매가능

\* 캐나다 : 소매상점판매는 사람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형태의 제품과 상표에 "수의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에만 가능.

\* 벨기에 : 약사자격중 소지자만 상점개업 가능함. 또, 보건부의 동물용의약품소매업 등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함.

\* 호주 : 도매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함.(동일 법령이 적용됨)

\* 네덜란드 : 소매업자는 약사이어야 함.(사료공장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품처리된 사료를 농부에게 판매할 수 있음)

\* 프랑스 : 의사와 약사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의사의 처방전이 요구됨.

\* 덴마크 : 약사이어야 함.

6. 도매업자는 동물용의약품을 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나? 또는 수의사나 농민에게도 판매할 수 있나?

\* 잉글랜드 : 도매상은 절대로 농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도매업자는 오직 의사, 농산물 상인(非항생제), 또는 사료공장에만 판매할 수 있다. 사료공장의 경우, 수의사의 허가없이 농민에게 판매할 수 없다.

\* 아일랜드 : 약사, 의사, 농산물상인, 협동조합, 그리고 농민에게 판매가능.

\* 독일 : 의사에게는 판매가능. 그러나 농민에게는 판매不可.

\* 캐나다 : 이는 문제의 약품이 무엇이냐에 달렸다. 상점판매용 제품의 경우, 도매업자는 모든 종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의사나 소매업자에게 체면이 깎일까봐 농민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벨기에 : 오직 소매업자에게만.

\* 호주 : 도매상은 자신의 모든 동물용의약품을 자격이나 허가만 있으면 소매상이나 도매상에 판매할 수 있다.

\* 네덜란드 : 도매상은 의사에게 판매가능. 특정 제품은 농민에게 직접 판매 가능(例: 구충제)

\* 프랑스 : 不可. 오직 의사와 약사만이 동물용의약품 취급가능, 이때 수의사의 처방이 요구됨.

\* 덴마크 : 도매상(약사)은 의사에게 제품판매가능.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에게 제품판매가능. 백신은 국가당국에 의해 의사에게 직접판매됨.